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61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청(안 제4조~제5조)
- 라.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관내의 보호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된다.

-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보호시설 설치
2. 보호수 생육공간 확보 및 정기적인 주변환경 점검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앞쪽)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수	
소재지 및 위치				지목	
수령 (지정일자 기준)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m)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지정사유 (연혁, 전설 포함)					
나무의 특징					
해제사유					

(뒤쪽)

년·월·일	구분	점검·진단 결과 및 관리 조치사항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